

世界各國工業所有權制度便覽 (2)

[註]

(1) ① 파리條約項中, ○는 加入을, ×는 未加入을 表示

(2) ② 特許法 項中, ○는 特許法이 「有」, ×는 「無」이고, 또 △는 他國의 特許法을 適用하고 있음을 表示

(3) ③ 出願人의 資格 項中, ⊙는 「發明者 및 承繼人」이 出願을 할 수 있음을, ○는 「發明者만」이 出願할 수 있음을, 또 △는 例外規定이 있음을 表示(備考參照). 여기서 「發明者만」이라고 함은 發明者(또는 그 相續人)外에는 特許出願을 할 수 없음을 말하고, 따라서 出願前에 發明이 他人에 양도되어있는 경우라도, 出願人名은 「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」의 名義에 의할 것이 要求되고, 다만 양도증을 첨부해서 出願을 해두면 特許證이 양수인에게 交付되게 된다.

(4) ④ 審査의 項中, ○는 「審査主義」를, ×는 「無審査主義」를 取하고 있음을, 또 △는 例外規定이 있는 것을 나타냄.

(5) ⑤ 新規性判斷基準의 項中, ○는 「內外國公知公用·內外國刊行物」을, □는 「國內公知公用·內外國刊行物」을, △는 「國內公知公用·國內刊行物」을 각기 基準으로 하고 있음을 表示함.

(6) ⑥ 存續期間의 項中, “起算日”의 項에서, 「出」은 出願日을, 「許」는 特許日을 「公」은 公告日, 「完」은 完全明細書提出日을 각각 存續期間의 始期로 함을 나타낸다. 또 “期間”의 項에서 「延」이 있는 것은 期間延長을 나타냄.

(7) ⑦ 特許의 對象이 되지 않는 發明의 項은 項中記載된 物質 그 자체의 特許發明을 許與하지 않는데 그치고, 그 製法은 무엇이랴도 特許對象으로 된다.

※은 (1) 發見, 科學的理論 및 數學的方法, (2) 美的創作物, (3) 게임·商業的方法 및 컴퓨터프로그램, (4) 情報表現形式 (5) 動·植物 變種을 나타냄.

(8) ⑧은 出願公告의 項中, 月 또는 日數의 表示는, 모두 公報 또는 官報等에 公告後의 公告期間. 따라서 그 期間內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냄.

(9) ⑩ PCT(特許協力條約) ○는 署名國, ⊙는 加入國, △는 批准國을 나타내고, ×는 未加入을 나타냄.

(10) ⑪ EPC(歐州特許條約) ○는 署名國, ⊙는 批准國을 나타내고, ×는 未加入을 나타냄.

(11) ⑫, ⑬에서 「無」는 制度가 없는 것을 나타냄.

(12) ⑭ 備考의 項中,(特)은 當該項中 特異한 特許制度를 나타냄.

▲「發明者證」은 소련等 社會主義國에서 採用되고 있는 것으로 發明에 對해서는, 이 「發明者證」 또는 特許(資本主義國의 그것과 同一)중 어느것이든 出願人의 選擇에 의해, 附與되는 것이나, 「發明者證」을 附與받은 때는, 그 實施權은 國家에 法律上 當然歸屬되는 것으로 되고, 被交付者는 單純히 「報酬」「所得稅減免等의 特典」이 附與되는 것에 불과하다. 東獨의 「經濟特許」도 上記 發明者證과 類似한 것이다.

▲「輸入特許」(또는 「確認特許」)라 함은 外國特許를 가진 者가, 그 外國特許의 殘存期間中 언제라도 輸入特許(또는 「確認特許」)制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에 對해 特許出願을 할 수 있는 것이며, 出願審査에 對해서는 一般의 新規性判斷基準이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함.

▲「發見者證」은 自然界의 重要한 法則, 特性現象을 發見, 確認한 者에 交付된다.

▲「合理化提案者證」은 小發明을 保護하는 制度이다.

▲假特許

〈金亨昊 記〉

特許情報

特許制度

州 名	國 名	① 特 許 條 約	② 出 願 人 의 資 格 查	③ 新 規 性 判 斷 基 準	⑥ 存 續 期 間		⑦ 特 許 의 對 象 이 되 지 않 는 發 明	⑧ 出 願 議 公 告 (月)	⑨ 實 施 義 務 (年)	⑩ P C T	⑪ E C	⑫ 公 開 制 度	⑬ 審 查 請 求 (年)	⑭ 備 考		
					起 算 日	期 間 (年)										
유 럽	알바니아	×	○	—	○	出	15	醫藥, 食物	3	—	—			發明者證만 可能		
	이탈리아 (1979年法)	○	○	◎	×	○	20	※	無	3	◎	◎	○ (18個月)			
	바티칸	○	△	◎	×	○	出	15	醫藥(製 法도 不 可)	無	3	○	×	이탈리아法을 適用, 이 탈리아特許權이 미침		
	오스트리아	○	○	◎	○	○	公	18	醫藥, 食物	4	3	◎	◎			
	네덜란드 (1978年法)	○	○	◎	○	○	出	20	※	4	3	◎	◎	○ (18個月)	○ (出願日 로부터 7年)	植民地 및 海外領에도 네 덜란드法이 適用된다. • 審査請求是 新規性審査 請求와 實體審査請求가 있다. (共히 出願日로부터 7年以內에 請求) • 公開後情報提供 • 國內優先制度
	그리스	○	○	◎	×	△	出願의翌日	15	醫藥	無	3	×	◎			
	英國 및 북아일랜드 (1977年法)	○	○	◎	○	○	出	20	※	無	3	◎	◎	○ (18個月)	○ 新規性: 出願日 (優先日) 로부터 12個月 實體: 公開로 부터6個 月	○ 만島에도 効力이 미침 • 豫備審査, 調査를 出願 日로부터 1年以內에 請 求 • 公開後情報提供 • 國內優先制度
산마리노 스위스	○	×	○	○	○	出	20	(산마리노·이탈리아條約에 依據, 이탈리아에서 取得한 特許權이 適用된다.) ※	3	3	×	×	◎	◎	註 1) 다음의 技術分野에 屬하는 發明에는 實體審 查가 行해진다. (1) 原材料이거나 이미 加工되어 있거나 간에 모든 種類의 織物方法 의 改良方法으로서 純 粹機械的인 方法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製 品 및 織物工業과 關 聯한 製造方法 (2) 時計測定技術에 特 히 適合한 特徵을 가 진 發明	

特許情報

州 名	國 名	① 條 約	② 特 許 法	③ 出 願 人 의 資 格	④ 審 査	⑤ 新 規 性 判 斷 基 準	⑥ 存續期間		⑦ 特許의 對 象 이 는 明 發	⑧ 出 (異 議 申 請) 告 告 (月)	⑨ 實 施 義 務 (年)	⑩ P C T C	⑪ E C P T C	⑫ 公 開 制 度	⑬ 審 査 請 求 (年)	⑭ 備 考	
							起 算 日	期 間 (年)									
유럽	스웨덴 (1978年 6 月 1日)	○	○	◎	○	○	出	20	※	3	3	◎	◎	○ (18個月)		公告後 2個月以內에 公告 料을 支拂하지 않으면 出 願은 失效됨.	
	스페인	○	○	◎	△	○	出	20	醫藥, 化學物質 組織運營 方法, 標 識建設計 劃, 教育 訓練方法 物品의 外 觀	無	3	×	◎	○ (18個月)		(特) 發明者證, 發見者證, 合理化提案者證, 化學物 質, 醫藥, 食物, 治療法 은 發明者證만 可能	
	소련	○	○	◎	○	○	出	15	醫藥, 食 物, 化學 物質, 原 子核, 微 生物	無	無	◎	×			(特) 發明者證 醫藥, 食物, 化學物質, 微 生物, 原子核變換의 發明 은 發明者證만 可能.	
	체코슬로 바키아 (1972年 11 月 1日)	○	○	◎	○	○	出	15	醫藥, 食 物, 化學 物質, 原 子核, 微 生物	3	3	×	×			(特) 發明者證 醫藥, 食物, 化學物質, 微 生物, 原子核變換의 發明 은 發明者證만 可能.	
	덴마크 (1978年法)	○	○	◎	○	○	出	20	食物과 그 方法	3	3	◎	○	○ (18個月)		페로諸島 및 그린란드 에도 保護의 效力이 미침. 노르딕 4個國 特許法適用. (特) 植物特許	
	西獨 (1981年)	○	○	◎	○	○	出願의 翌日	20	※	3 (特許 與日부 터) (公告 制度 無)	無	◎	◎	○ (18個月)	○ (出願日 로부터 7年)		
	東獨	○	○	◎	○	◎	出願의 翌日	18	※	無	無	×	×			(特) 經濟特許 國民經濟上, 社會上 또 는 文化上 必要가 있는 경우는, 補償의 支拂下 에 特許의 制限 또는 取 消가 行해진다.	
	노르웨이 (1980年法)	○	○	◎	○	○	出	20	醫藥, 食 物	3	3	◎	○	○ (18個月)		(特) 植物特許	
	헝가리 (1983年)	○	○	◎	○	○	出	20	醫藥, 食 物, 化學 物質	無	3	◎	×	○ (18個月)	○ (公開日 로부터 4年) (註 2)	註 2) 1. 審査請求는 누구 든지 請求할 수 있으나, 職權으로도 할 수 있다. 2. 出願後 完全審査請求 가 없는 경우, 方式審査 및 45條 (a)~(c)의 審査 를 行하고 公開한다.	
	핀란드	○	○	◎	○	○	出	20	動植物의 變種, 醫 藥, 食物	3	3	◎	×	○ (18個月)			
프랑스 (1978年法)	○	○	◎	○	○	出	20	※	(調查 報告 書公	3	◎	◎	○ (18個月)	○ (出願日 또는 優	• 出願人은 出願時에 醫 藥을 除外하고 出願에 관해서 調查報告書의		

特許情報

州名	國名	①特許條約	②特許出願人의 資格	④審査	⑤新規性判斷基準	⑥存續期間		⑦特許의 對象이 되는 發明	⑧出願(異議申請) (月)	⑨實施義務 (年)	⑩P E C P T C	⑪公開制度	⑬審査請求 (年)	⑭備考
						起算日	期間 (年)							
유럽	불가리아	○	○	○	○	○	출 15	發明者證은 無期限	無	3	○	×	⑬ 先日から부터 18個月 ⑭ 작성을 1年間に 연기해 줄 것을 要求할 수 있다. (特) 實用特許(Certificats d'utilité)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6年 (特) 植物特許 (特) 發明者證, 發見者證, 化學物質, 醫藥, 食物, 診斷方法, 動植物의 變種 原子力利用技術의 發明은 發明者證만 可能. 註 3) 調査報告書의 請求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年 (特) 發明者證 ① 出願이 正當하고, 不特許事由에 해당하지 않으면 産業上利用性, 新規性審査後 公開하고, 當該 出願의 先後願關係를 審査하고 假特許를 許與한다. ② 누구든지 公開願 6個月以內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. ③ 出願人은 假特許 또는 特許中 어느 것을 選定할 수 있다. ④ 假特許出願을 한 경우 出願日로부터 4年以內에 完全審査할 수 있다. ⑤ 特許出願의 경우 公開로부터 6個月以內에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. (特) 假特許(出願日로부터 5年) 出願人의 資格中, 發明者와의 共同出願이 可能, 假明細書制度 있음.	
	벨기움	○	○	○	×	○	출 20	*	無	3	○	○		
	폴란드	○	○	○	○	○	출 15	컴퓨터 프로그램, 治療方法 動植物의 變種 醫藥 食物, 化學物質, 原子核變換物質	6個月 (公開後)	3	×	×		○ (18個月)
	포르투갈	○	○	○	×	○	特 15	醫藥, 食物 化學物質	90日 (公開後)	3	×	×		○
	말타	○	○	○	×	○	特 14	-	2	3	△	×		
	모나코	○	○	○	×	○	出 20	醫藥 藥 食物, 化學物質, 動植物의 變種	無	3	○	○		○ (18個月)
	유고슬라비아 (1981年)	○	○	○	○	○	出 7	醫藥, 食物, 化學物質, 動植物의 變種	無	3	○	×		○ (18個月)
	리히텐슈타인	○	×	(스위스와의 協定에 效力이 미침)				依據, 스위스特許法의		○	○	○		○ (公開日로부터 4年)

特許情報

州 名	國 名	① 과 리 條 約	② 特 許 法	③ 出 願 人 의 資 格	④ 審 査	⑤ 新 規 性 判 斷 基 準	⑥ 存續期間		⑦ 特許의 對 象 이 는 發 明	⑧ 出(異) 願(議) 公(申) 告(請)	⑨ 實 施 義 務 (年)	⑩ P C P	⑪ E T C	⑫ 公 開 制 度	⑬ 審 査 請 求 (年)	⑭ 備 考
							起 算 日	期 間 (年)								
유 럽	룩셈부르크	○	○	○	○	○	出	20	* 物, 化學 物質動原 子核變換 物의 變種 物의 變種 物의 變種	無 無	3 3	○ ○	○ ○			(特) 發明者證 原子核變換物質, 醫藥, 化學物質, 殺蟲劑, 食物, 動植物變種에 관한 發 明은 發明者證만 可能
	마니아	○	○	○	○	○	出	15								
아 메 리 카	(北美 및 中美) 美 國	○	○	○	○	□	特	17 (註 1)	原子兵器 에서의 特殊한 核物質	無	無	○	—			(特) 植物特許, 意匠特許, 先發明主義, 再審査制度 註 1) 醫藥特許는 最長 5 年間 延長可能. 但, 延 長後의 期間은 醫藥承 認으로부터 14年을 限 度로 한다. (特) 輸入特許
	엘살바도르	×	○	○	×	○	特	5, 10, 15 (延 5 또 는 10)	—	90日	無	×	—			알버타, 브리티시콜롬비아, 마니토바, 뉴브랑스윅, 노 바스코치아, 온타리오, 프린 스에드워드島, 퀘벡, 새스 캐츄얼, 뉴화우드랜드, 노 스웨스트領에도 保護의 效 력이 미친다.
리 카	캐나다	○	○	○	○	□	特	17	—	無	3	○	—			알버타, 브리티시콜롬비아, 마니토바, 뉴브랑스윅, 노 바스코치아, 온타리오, 프린 스에드워드島, 퀘벡, 새스 캐츄얼, 뉴화우드랜드, 노 스웨스트領에도 保護의 效 력이 미친다.
	바하마 (1965年)	○	○	○	○	○	出	16	動植物의 變動 原理, 會 計시스템 動植物로 부터 直 接產出한 物	無	無	×	—			(特) 發明者證 化學物質, 醫藥 및 食品의 發명은 發明者證만 可能.
카 리 비 안	쿠바	○	○	○	○	○	出	10 延 5	—	無	3	×	—			(特) 發明者證 化學物質, 醫藥 및 食品의 發명은 發明者證만 可能.
	과테말라	×	○	○	○	○	特	15	醫藥, 代 學物質, 飲食物	2個月	1	×	—			(特) 輸入特許
카 리 비 안	코스타리카	×	○	○	×	○	特	12 (註 2)	—	無	3	×	—			(特) 確認特許 註 2) 舊法에 의거 許與된 特許는 特許日로부터 20 年間 有效 (特) 確認特許
	자마이카	×	○	○	×	△	特	14 (延 7)	規定없음	無	無	×	—			(特) 確認特許
카 리 비 안	도미니카	○	○	○	×	○	特	5, 10, 15 (延長有)	—	無	5	×	—			(特) 確認特許
	트리니다드 토바고	○	○	○	×	△	特	14 (延 7)	無	無	無	×	—			(特) 確認特許
카 리 비 안	니카라과아	×	○	○	×	△	特	10	—	30日	1	×	—			(特) 確認特許
	아이티	○	○	○	×	△	特	5, 10, 20 (延長有)	—	無	無	×	—			(特) 確認特許
카 리 비 안	파나마	×	○	○	×	△	特	5, 10, 15 20	—	90日	1	×	—			(特) 確認特許

(계속)